



제 418국회 (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검 토 보 고

< 현행 법률 폐지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006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 옥 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현행법의 연혁 및 주요내용	2
2. 현행법 폐지에 관한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27.

다. 회 부 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1999년 폐지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 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현행법의 연혁 및 주요내용

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혁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권고적·훈시적 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73년부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청첩장에 의한 하객초청 등 금지 및 위반 행위자의 처벌규정을 두었다가 1993년부터 허례허식 금지행위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였고,

1999년 2월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4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나. 현행법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 합리화와 건전한 가정의례 보급·정착 및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¹⁾.

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보급 및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3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정하도록 하며, 사회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하도록 하고(제5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제6조), ④ 공공기관 등의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도록 하고(제7조), ⑤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계몽하기 위한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8조).

2. 현행법 폐지에 관한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이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이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1969년 법률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가정의례의식절차에 대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국가주의 잔재라는 비판이 지속되었으며,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²⁾의 내용은 가부장적이고 성

2)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개정 2019. 7. 2.>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차별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보조금의 지원, 명예가정의례지도원 등은 현재 거의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 제2조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가정의례는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기념하는 가정의 자율적인 통과의례이므로, 국가가 판단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계몽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합리적이고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합리적 생활문화가 민간차원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³⁾

현행법은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내용이 없는 권고적·훈시적 법률이며 가정의례의 범주는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폐지에 따른 혼

제20조(기제사) ①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②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1조(차례)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만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3) 여성가족부는 일반국민 및 20~30세대,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작은 결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작은결혼문화 확산 촉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2019년까지 ‘작은결혼문화확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란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내용에 공공기관 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7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동 법률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문화된 내용을 담고 있고, 실질적인 행정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률 폐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률 폐지와 관련하여 폐지 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⁵⁾

관련 단체의 의견을 살펴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미 사문화된 법률이므로 폐지된다 하여도 여성가족부의 사업 추진에 실질적 영향

4) 「건강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 및 국·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5)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조사(2021년)

- 설문 참여자 4,334명 중 3,045명(70.3%)이 「가정의례법」 ‘불필요’ 의견이었으나, 1,289명(29.7%)이 ‘필요’ 의견을 제시함.

이 없을 것으로 보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또한 현행법은 국민의 가정생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구시대적 규정이므로 폐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나, (사)한국예절아카데미는 전통문화 및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법률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649